

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임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별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여성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자,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영등포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朴南五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專門委員 崔泰成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 1페이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서 “구청장이 여성정책결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여성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여성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에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성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이러한 규정이 고려되지 않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조례가 소극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 법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하나의 장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 기금의 설치 조항이 배제되었는바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즉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의 기금운용을 기본적인 사항과 개별기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기금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시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5개 구청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 또는 여성발전

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및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현황
=====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발전 기금설치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 조례	99. 7.31	○	○
2	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00.12.11	×	○
3	도봉구여성발전기본조례	01. 1.18	○	○
4	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00.12. 4	○	○
5	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01. 4.28	○	○
6	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00.12.30	×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배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南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貞子 委員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구성에 대해서 2항 3호에 보면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도 여러 곳에 겸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항3호는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사회복지과장 최창제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朴貞子 委員 예,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여기에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말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 대표는 부녀회나 새마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YMCA, YWCA, 주부클럽연합회 같은 큰 여성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구의 조그마한 단체 대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朴貞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南五 예,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金東喆 委員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수당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수당하고 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입니다. 이것에 따라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한 공청회나 강연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喆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없죠?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예.

○金東喆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행자부의 기본방침은 우리 기금을 전부 통합하라는 입장이거든요.

○金東喆 委員 내년부터 통합하라는 얘기인데...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그런데 지금 당장 구 전체 기금을 통합하기 힘들다면, 가령 저희 과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만이라도 통합을 해 가지고 조례에 세항으로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喆 委員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을 통합해야지. 그냥 따로따로 놔두니까, 우리 조례만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崔昌濟 예, 그렇습니다.